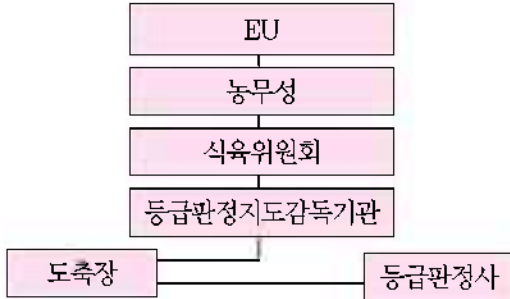


0101000011101011010011010111010101010000111010110100110101101

덴마크 등급판정관리 체계도



자조금의 인상요인으로는 국가 물가 상승률 적용, 사회적 통상임금 수준, 식육위원회 사무실 운영비, 등급판정지도감독관 6명 인건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육위원회에서 인상률을 결정한다. 납부의 주체는 출하농가이고 결제방식은 대금정산시 자조금을 공제하여 도축장에서 일괄 수납하므로 등급판정수수료 및 식육위원회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수수료징수에 대한 농가의 거부감은 없다.

독일 (연방식육연구센터 : BFEL)

소비자보호식품농무성 산하로 가축의 지방을 포함해서 기금육과 계란은 물론이고 식육의 생산량과 공급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학자 37명, 기술자 70명을 포함해서 전체 142명이 근무, 등급판정관련 업무 종사자는 6명이다. 주요 업무는 주정부 등급판정사 감독관 50명에 대한 지도감독, 양성교육, 보수교육, 등급판정기계승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금액 결정은 등급회사와 작업장간의 자율적인 계약관계이므로 협상에 따라 수수료 단가가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에 대해서는 1유로(약 1,300원), 돼지에 대해서는 30cent(약 400원)를 받고 있다.

□ 도축시설 및 도축두수

덴마크의 소도축장은 50개소(12개소에서 전국 도축두수의 95%차지)이고 돼지는 80개소(27개소에서 전국 도축두수의 97%차지)이다. '04년 전국도축두수는 소가 540천두, 돼지 22,000천두이며, 등급판정



독일 등급판정업무관리 체계도



사인원은 소 40명, 돼지 200명 정도이다.

독일은 전국에 297개(소 97개, 돼지 200개)의 도축장이 있으며, 대형도축장(EU규정총축)에서의 도축물량은 전체도축물량의 약 35%이며, 나머지는 중·소형 도축장으로 운영주체는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많고, 대형도축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많다. 연간 판정두수는 '04년 소 3,500천두, 돼지 47,000천두를 판정하였고, 등급판정은 모든 도축장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등급판정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500명 정도로 등급판정업무를 위탁받은 개인회사가 등급판정사를 채용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전국에 18개 등급판정 회사가 있다.

□ 유럽연합(EU)의 등급판정방법 및 기준

돼지는 주당 200두 이상 작업하는 도축장과 소 주당 50두 이상 작업하는 도축장은 유럽연합(EU)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등급판정을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 소는 대부분의 작업장에서 인력으로 등급판정을 실시하며, 일부는 기계(BCC2)를 이용하여 '04.8월부터 실시 중에 있고 유럽연합(EU)의 소도체 등급기준은 도체의 살코기 생산성위주로 설정되어있으며 유럽연합 회원국간의 교역이 이루어질 때 적용이 되지만 각 회원국내에서 교역이 이루어질 때는 자국의 소도체등급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소도체의 성별 및 종류의 분류에 따라 A, B, C, D, E로 구분하며 또한, 도체의 살찐 정도의 외관에 따라 6개 등급(S, E, U, R, O, P등급)으로 나누어진다. 지방등급은 도체외관의 피복상태에 따라 1, 2, 3, 4,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 돼지등급판정은 각 회원국들의 국내유통 도체의 등급기준은 독자적으로 독특한 등급기준을 적용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나, 회원국간 교역에서는 반드시 유럽연합(EU)의 규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EU규정에 의해 승인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분 AutoFom을 사용하고 있지만 소형도축장에서는 Fat-O-Meter를 사용한다.

돼지등급의 구분방법은 정육율에 기초하여 S, E, U, R, O, P, E의 6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 가격정산방법 및 농가통보

지육대금 정산방법은 등급과 도체중에 의거 정해지며 덴마크에서는 도축량의 95%를 차지하는 Danish Crown에서 매주 기준 공시가격을 발표하여 활용하는 방법과 돼지에서는 도체중 70~85kg을





기준으로 체중이 높거나 낮으면 kg당 감액지급방법, 수율기준(60% 기준)으로 하는 방법 등이 있다. 등급 판정결과와 생산자에게 농가통보방법은 도축장에서 1주일 단위로 농가에 대한 등급판정결과 및 대금정산서를 송부하고 위원회에서 3개월에 한번씩 확인하고 있다.

독일의 농가통보는 대금정산서와 병행하여 작업장에서 주단위로 통보하며 통

보내용은 도축장번호, 도체중량, 등급, 정산가격으로 등급회사에서 직접 인터넷이나 이메일로 일부 통보하고 대부분은 우편을 이용하여 통보한다.

또한 등급판정 소식지에 대한 서비스는 유료로(30유로/년, 약 40,000원) 하고 있다.

□ 출장결과

유럽연합(EU)내의 회원국들이 각 국가별로 채택하여 온 소도체 등급제도에서 같은 평가요인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등급기준이 상이하므로 회원국들간의 쇠고기 유통에 애로가 많이 발생되었다. 각 회원국들이 유럽연합내의 하나의 시장을 통합 목표로 하는 과정에서 식육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인 등급제의 통일이 요구되어 등급의 기준이 육량위주의 품종육성에 주력하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유통과정은 도축장에서 도축 및 부분육가공장에서 가공 후 소매점까지는 박스육으로 포장 유통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바코드(개체식별번호, 소의 종류구분, 육량등급, 지방등급, 도체중, 출생국가, 생산국가, 도축일, 도축장 허가번호, 월령 등 EU 표시규정에 의거)에 모든 정보가 표기되어 유통이 되고 있으며, 소매단계에서의 소, 돼지고기 등급에 대한 정보는 표기하지 않고 판매되고 있다.

식육판매장에서의 판매형태는 냉장 쇼케이스에 부위별 소분할 부분육을 진공포장 또는 플라스틱용기에 비닐포장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육상장 위주의 거래와 유통단계의 불명확함에 따른 소·돼지고기 유통현황 파악이 어렵고 부분육에 대한 확인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따라 소매점에서의 등급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안, 유통개선 및 품질관리 차원에서 산지도축 후 부분육가공 및 도매시장·공판장에서의 부분육 상장제의 활성화 유도로 등급별·부위별 거래의 정착 등으로 유통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공정거래 실현을 위해 유통업계 및 축산업계가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